

집필 원칙

2003. 12. 30. 제정

2019. 05. 16. 개정

제1장 본문 표기 방식

제1절 문체는 간결한 문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고유 명사 · 전문 용어 · 자료 · 논저명은 처음에만 해당 외국어로 표기한다. 단, 정확한 한글 발음을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

제4절 본문의 문장 속에 사용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① “ ” 인용
- ②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③ 『 』 문헌 · 저서 · 정기 간행물(학회지 포함) · 신문
- ④ 「 」 논문 · 작품
- ⑤ · 동일 사항의 나열

제2장 인용 방식

제1절 모든 인용문은 논리 전개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본문 가운데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겹따옴표(“ ”)로 묶으며, 출처는 각주로 단다.

제3절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제4절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방점 또는 이탤릭체, 고딕체로 표기한다. 단, 강조의 경우, 한 문장 이내에서 별도 표시한다.

제5절 전략 · 중략 · 후략 등의 말줄임표는 ‘…’로 표기한다.

제6절 문단을 바꾸어 별도의 문장으로 인용할 경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한 포인트 줄이고 겹따옴표를 붙이지 않으며, 출처 표기는 제2장 제2절과 같이 한다. 그리고 앞 · 뒤의 본문과 각각 한 줄씩 띄워서 본문과 구별하고, 왼쪽 · 오른쪽의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로 한다.

제7절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原典)과 인용서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제8절 인용문 안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할 수 없다.

⇒ 다블뤼 주교는 혹독한 형벌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 다블뤼 주교는 혹독한 형벌에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제3장 각주 표기 방식

제1절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동양어로 된 논저인 경우에는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① 논문

A. 필자명 · 논문 제목 · 게재지명 · 권수 · 호수 · 간행처 · 간행 연도 · 쪽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B. 논문은 홑낫표(「 」), 게재지는 겹낫표(『 』) 안에 표기한다.

C. 논문과 게재지 사이에는 쉼표(.)를 넣고, 인용 논문과 각주의 끝은 마침표(.)로 표시한다.

D. 게재지의 권 · 호 · 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예컨대 제3권 제5호인 경우에는 '3-5'로 표기한다.

E. p. · pp. · 면 등은 모두 '쪽'으로 표기한다.

⇒ 방상근, 「병인박해기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존재 형태와 역할」, 『教會史研究』 19, 2002, 75쪽.

F.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기사의 경우에는 문건(기사)명 · 신문(잡지)명 · 발행 연월일 · 면수의 순서로 표기하되, 필자가 있는 문건(기사)을 인용할 때에는 문건(기사)명 앞에 필자명을 표기한다. 단, 신문은 '면', 잡지는 '쪽'으로 표기한다.

⇒ 「교회와 정치」, 『가톨릭시보』 1960년 6월 5일자 3면.

⇒ 노기남, 「1950년 연두사」, 『경향잡지』 1950년 1월호 7쪽.

G. 여러 차례 간행된 논문의 경우 필자가 구분하기를 원할 때 콜론(:)을 사용한다.

H.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② 저서

A. 저자(편자 · 편저자 · 역자)명 · 서명 · 간행지 · 간행처 · 간행 연도 · 쪽수 순서로 표기한다.

B. 서명은 겹낫표(『 』)로 표기한다.

C. 번역서일 경우에는 번역된 현재의 서지 사항을 표기하되, 역자명 다음에 쉼표(.)를 붙인 뒤 원저자를 명시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 Mark A. Peterson, 김혜정 역, 『유교 사회의 창출』, 일조각, 2000.

E. 인용 서적이 편저일 경우에는 편자의 이름 끝에 편 또는 編을 붙인다. 편저물 속의 논문을 인용할 때 편저자를 생략하고 해당 논문의 필자만을 표기한다.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순교자들의 전기』, 천주교 대구교구, 1991.

③ 중복의 경우

A. 동일인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밖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앞의 것은 '같은 책'이나 '같은 논문', 또는 '같은 글' 등으로 표기한다.

B. 바로 앞은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앞의 책'이나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 등으로 표기한다.

C. 재인용을 할 때 구분이 필요한 사항은 표기하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서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D. 같은 필자(저자)의 논문(저서)이 둘 이상 나올 경우에는 필자(저자) · 제목 · 쪽수를 표기하되,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지를 생략한다.

⇒ 유홍렬, 『高宗治下 西學受難의 研究』, 34쪽.

⇒ 이원순, 「한국 천주교 교육 사업의 교육사적 의의」, 22쪽.

제3절 서양어로 된 논저인 경우에는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① 논문

- A. 필자명 · 논문 제목 · 게재지명 · 권수 · 호수 · 간행처 · 간행 연도 · 쪽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 B. 논문은 겹따옴표(“ ”) 안에 제목을 쓰고, 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C. 권수는 ‘Vol.’을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D. 호수는 ‘No.’를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E. 권수와 호수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표(-)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 F. 쪽수는 ‘p.’나 ‘pp.’로 표기한다.

② 저서

- A. 저자(편자 · 편저자 · 역자)명 · 서명 · 간행지 · 간행처 · 간행 연도 · 쪽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 B.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C. 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D. 쪽수는 ‘p.’나 ‘pp.’로 표기한다.
- E. 인용 서적이 편저일 경우에는 편자의 이름 끝에 ‘ed.’을 붙인다. 편저물 속의 논문을 인용할 때 편자를 밝혀 준다.

⇒ Donald A. Baker ed., *Confucians Confront Catholicism in Eighteenth-Century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1983.

③ 중복의 경우

- A. 동일인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밖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앞의 것은 ‘같은 책’이나 ‘같은 논문’, 또는 ‘같은 글’ 또는 ‘Ibid.’ 등으로 표기한다.
- B. 바로 앞은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앞의 책’이나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제4절 한적본(漢籍本)을 인용하는 경우

- ① 가장 큰 책의 범주는 겹낫표(『 』)로 묶고, 하위는 홑낫표(「 」)로 묶는다. 하위를 다시 나눌 경우에는 홑낫표(「 」) 내에 붙임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 정약중, 『주교요지』, 「상편-턴쥬온전이알으시니라」, 국학자료원, 2003.

- ② 서지 사항을 표기할 때에는 동양서의 일반적인 표기법에 따라 판본을 밝혀 둔다. 단, 판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서(經書)나 사료(史料)는 서명과 편명만을 표기할 수 있다.

⇒ 『정조실록』 권 26, 정조 12년 8월 임진.

제5절 각주 안에서 서명을 인용하는 경우

- ① 인용 대상을 제외한 부수적인 서지 사항은 모두 괄호로 처리한다.
- ② 불필요한 서지 사항은 괄호 안에서 생략할 수 있다.

제6절 각주에서 참고 문헌과 인용문을 달 경우

- ① 각주에서 참고 문헌을 달 때에는 해당 문장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표기한다.
- ② 각주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경우에는 인용문을 겹따옴표(“ ”)로 묶어주고, 전거는 그 뒤

에 표기한다.

- ③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 ‘줄고(拙稿)’ · ‘줄저(拙著)’나 ‘필자(筆者)’ · ‘저자(著者)’로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한다.

제4장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사연구』의 관례에 따른다.